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박 물 관 및 미 술 관 진 흥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2023. 6. 20. 공포, 12. 21.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및 법 적용대상 시설(동물원, 수족관) 및 학예사 자격요건 정비를 위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박미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안 제2조의2부터 제2조의5까지 신설)

1) 기본계획(수립주기 5년) 및 시행계획(수립주기 1년)의 수립, 평가절차 등 마련

– 종전에 박미법 제9조에 따라 수립하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책’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을 각각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으로 규정

2) 실태조사의 내용(박물관·미술관의 개수, 지역별 소재 현황, 시설·인력·이용자 수, 소장자료 현황 등)과 방법을 규정, 매년 발간하는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의 근거 규정 마련

나. 박미법 내 타 법률 소관시설(동물원, 수족관) 정비(안 제2조 및 별표 2)

1) 제2조에 따라 문체부장관이 인정하는 문화시설 중에 동물원·수족관을

삭제하고, 별표 2 등록요건 중 동물원·수족관 요건 삭제

- 동물원·수족관법 제정 시 경과조치로 박미법에 따라 등록된 동물원·수족관*을 이관하도록 규정하으나, 박미법 시행령에 여전히 등록요건이 남아있어 삭제 필요

* '21.12.31. 기준 박물관으로 등록된 동물원·수족관 0개관

다. 학예사 자격요건 정비(안 별표 1)

1) 3급 정학예사 및 준학예사 자격요건 중 학위취득과 실무경력의 선후 관계를 명확화(준학예사: 시험 합격 전 경력이라도 학위 취득 후의 경력은 인정 등)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합의 전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동물원이나 식물원 또는 수족관”을 “식물원”으로 한다.

제2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을 신설한다.

제2조의2의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를 신설한다.

제2조의2의제2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를 신설한다.

제2조의2의제3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를 신설한다.

제2조의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박물관 및 미

술관에 대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를 신설한다.

제2조의4(시행계획의 평가)를 신설한다.

제2조의4의1항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를 신설한다.

제2조의4의2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법 제5조의2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과의 부합도
2. 시행계획의 이행 충실도
3. 시행계획의 목표 달성도”를 신설한다

제2조의5(실태조사)를 신설한다.

제2조의5의1항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의 종류별 개수
2. 박물관 및 미술관의 명칭 및 지역별 소재 현황
3. 박물관 및 미술관의 시설·인력·이용자 수 및 소장자료 등의 현황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신설한다

제2조의5의2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제11조 본문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 등록 제○○호”를 “국립○○(유형코드)-등록연도(4자리)-○○호” 또는 “시·도-설립주체(공립·사립·대학)○○(유형코드)-등록연도(4자리)-○○호”로 한다.

별표 1의 1.의 자격요건란 제1호 중 “실무경력”을 “실무경력(학사학위 취득 후의 경력으로 한정한다. 이하 제 2호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표 1.의 자격요건란 제1호 중 “하고”를 “한 후”로, “실무경력”을 “실무경력(학위 취득 또는 학력 인정 후부터 시험 합격 전까지의 경력을 포함한다. 이하 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같다)”으로 하며, 같은 란 제2호 중 “하고”를 “한 후”로 하고, 같은 란 제3호 중 “하고”를 “한 후”로 하며, 같은 란 제4호 중 “실무경력”을 “실무경력(시험 합격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의 동물원과 수족관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문화시설의 인정)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5조에 따라 법이 적용되는 문화시설을 인정하려면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u>동물원이나 식물원 또는 수족관</u> 중에서 인정하여야 한다.	제2조(문화시설의 인정) ①----- ----- ----- ----- ----- <u>식물원</u>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2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u> <u>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u>

<신 설>

<신 설>

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
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
다.

제2조의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문화체육관광
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
관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5조의3제
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
해야 한다.

제2조의4(시행계획의 평가) ① 관
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

<신 설>

다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법 제5조의2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과의 부합도

2. 시행계획의 이행 충실도

3. 시행계획의 목표 달성도

제2조의5(실태조사) ①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의 종류별 개수

2. 박물관 및 미술관의 명칭 및 지역별 소재 현황

3. 박물관 및 미술관의 시설·인력·이용자 수 및 소장자료 등의 현황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

제11조(등록표시)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박물관과 미술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옥외간판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 등록 제○○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1]

학예사 등급별 자격요건(제3조 관련)

등 급	자 격 요 건
1급 정학예사	(생 략)
2급 정학예사	(생 략)
3급 정학예사	1.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경력 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 ~ 3. (생 략)
준학예사	1.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한

하여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등록표시) -----

----- “국립○○(유형코드)-등록연도(4자리)-○○호” 또는 “시·도-설립주체(공립·사립·대학)○○(유형코드)-등록연도(4자리)-○○호”---.

[별표 1]

학예사 등급별 자격요건(제3조 관련)

등 급	자 격 요 건
1급 정학예사	(현행과 같음)
2급 정학예사	(현행과 같음)
3급 정학예사	1.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경력 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학사학위 취득 후의 경력으로 한정한다. 이하 제 2호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자 2. ~ 3. (생 략)
준학예사	1.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법령에

	경우를 포함한다)<u>하고</u>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u>실무경력</u>이 1년 이상인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라 3년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u>하고</u>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u>실무경력</u> 이 2년 이상인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라 2년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u>하고</u>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u>실무경력</u> 이 3년 이상인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u>한 후</u>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u>실무경력(학위 취득 또는 학력 인정 후부터 시험 합격 전까지의 경력을 포함한다.</u> <u>이하 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같다)</u>이 1년 이상인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라 3년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u>한 후</u>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u>실무경력</u> 이 2년 이상인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라 2년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u>한 후</u>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사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u>실무경력</u>이 5년 이상인 사람
--	---

	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사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u>실무경력(시험 합격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u>이 5년 이상인 사람
--	--

[별표 2]

2. 개별요건

가.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유형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	학 예 사	시 설
동물원	100종 이상	1 명 이 상	1) 3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전시실을 포함한다)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3) 동물 사육·수용 시설 4) 동물 진료·검역 시설 5) 사료창고 6) 오물·오수 처리시설

[별표 2]

2. 개별요건

가.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유형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	학 예 사	시 설
동물원	100종 이상	1 명 이 상	1) 3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전시실을 포함한다)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3) 동물 사육·수용 시설 4) 동물 진료·검역 시설 5) 사료창고 6) 오물·오수 처리시설

수 족 관	100종 이상	1 명 이 상	1) 2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수 족 관	100종 이상	1 명 이 상	1) 2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3) 수족치료시설				3) 수족치료시설
			4) 순환장치				4) 순환장치
			5) 예비수조				5) 예비수조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연 락 처	(044) 203 - 2642